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17호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36호 도시계획시설(함봉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부분)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0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5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336호

도시계획시설(함봉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부분)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함봉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032-440-582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공원녹지과 ☎ 032-509-8682)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0. 2.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2) 명 칭 :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함봉근린 공원	도시 공원	153,851.6	-	57,186	-	1970.07.20. (건고 제344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218,948.0	57,186.0			1/1				
1	부평구	산곡동	310-149	학	552.0	552.0	인천광역시 (교육감)		1/1				
2	부평구	산곡동	370-378	도	166.0	61.8	국 (기획재정부)		1/1				
3	부평구	산곡동	370-386	잡	66.0	46.7	신○균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1/1				
4	부평구	산곡동	370-387	도	1,996.0	1.1	부평구		1/1				
5	부평구	산곡동	산42-3	임	21,229.0	12,250.2	국(산림청)		1/1				
6	부평구	산곡동	산43	임	4,860.0	4,860.0	대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7	부평구	산곡동	산44	임	54,354.0	23,648.4	대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한국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구분 지상권	
8	부평구	산곡동	산47-29	임	7,552.0	7,550.8	재단법인 ○○학원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1/1				
9	부평구	산곡동	산53-4	임	5,747.0	1,171.0	예○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2				
							박○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5/12				
							박○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5/12				
10	부평구	산곡동	산53-17	임	116,477.0	1,095.0	이○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6146 /116477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55	지상권 구분 지상권	
							정○모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31 /116477				
11	부평구	산곡동	산53-26	임	1,322.0	1,322.0	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2	부평구	산곡동	산53-27	임	1,984.0	1,984.0	배○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553.5/2214				
							배○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16	553.5/2214				
							배○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47번길	553.5/2214				
							배○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47번길	553.5/2214				
13	부평구	산곡동	산53-28	임	661.0	661.0	최○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1				
14	부평구	산곡동	산53-29	임	661.0	661.0	손○엽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1				
15	부평구	산곡동	산53-30	임	661.0	661.0	김○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1/1				
16	부평구	산곡동	산53-31	임	430.0	430.0	김○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1/1				
17	부평구	산곡동	산53-38	임	230.0	230.0	정○모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1/1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1	산곡동	산44	건물 (다용도실)	천막	H2.5	-	6.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2	산곡동	산44	건물 (음식점)	함석	H3.0	-	48.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	산곡동	산44	건물 (다용도실)	천막	H2.5	-	22.1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	산곡동	산44	건물 (음식점)	스레트	H3.0	-	60.5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5	산곡동	산44	건물 (음식점)	스레트	H3.0	-	57.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6	산곡동	산44	건물 (음식점)	콘크리트	H2.5	-	36.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7	산곡동	산44	건물 (다용도실)	천막	H2.5	-	7.5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8	산곡동	산44	가건물	-	H2.5	-	14.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	산곡동	산44	가건물	-	H3.0	-	25.2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10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	H2.5	-	3.1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11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	H2.5	-	42.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12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	H2.0	-	32.3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13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	H2.5	-	24.4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4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	H2.5	-	9.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5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	H2.5	-	16.8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16	산곡동	산44	대문	철재	D80xW1.2xH1.9	-	1	EA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	산곡동	산44	대문	철재	D120xW4.5xH2.4	-	1	EA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8	산곡동	산44	대문	철재	D60xW1.8xH2.2	-	1	EA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9	산곡동	산44	대문	철재	D100xW3.0xH2.2	-	1	EA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0	산곡동	산44	웬스 (울타리)	철재	W2.5xH1.6	-	205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1	산곡동	산44	경작지 (밭)	-	-	-	43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2	산곡동	산44	대왕참나무	-	R60	-	1	주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3	산곡동	산44	느티나무	-	R20,15,10	-	31	주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4	산곡동	산44	소나무	-	R20	-	4	주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5	산곡동	산44	스트로브잣나무	-	R12	-	90	주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26	산곡동	산44	건물 (음식점)	철골	H3.5	-	47.9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27	산곡동	산44	건물 (음식점)	스레트	H4.0	-	48.9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28	산곡동	산44	가건물 (창고)	천막	H3.0	-	10.5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29	산곡동	산44	웬스	목재	H1.2	-	57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0	산곡동	산44	담장	콘크리트	H2.5	-	60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31	산곡동	산44	담장	블록	H1.4	-	15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2	산곡동	산44	건물 (절)	함석	H3.5	-	58.9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3	산곡동	산44	건물 (절)	함석	H3.5	-	227.2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4	산곡동	산44	건물 (절)	함석	H3.5	-	55.7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5	산곡동	산44	건물 (절)	함석	H3.5	-	3.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6	산곡동	산44	건물 (창고)	조립식	H25	-	4.8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7	산곡동	산44	가건물	-	H3.0	-	31.6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8	산곡동	산44	대문	철재	W5.0xH2.5	-	1	EA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39	산곡동	산44	담장	콘크리트	H3.0	-	20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0	산곡동	산44	웬스	철재	H1.8	-	30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1	산곡동	산44	웬스	철재	H1.4	-	25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2	산곡동	산44	산벚나무	-	H5.0xR20	-	2	주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3	산곡동	산44	느티나무	-	R20	-	24	주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4	산곡동	산44	건물 (절)	조립식	H3.5	-	183.1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5	산곡동	산44	건물 (도예공방)	함석	H3.5	-	49.5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 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46	산곡동	산44	건물 (도예공방)	함석	H3.5	-	30.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7	산곡동	산44	건물 (도예공방)	함석	H3.5	-	61.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48	산곡동	산44	건물 (도예공방)	조립식	H3.5	-	78.8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2	49	산곡동	산53-4	건물 (음식점)	조립식	H3.0	-	11.2	m ²	예O란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1				
	50	산곡동	산53-4	가건물	-	H3.5	-	2.7	m ²	예O란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1				
	51	산곡동	산53-4	웬스 (울타리)	철재	H2.0	-	25	m	예O란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1				
	52	산곡동	산53-4	경작지 (밭)	-	-	-	336	m ²	예O란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1				
3	53	산곡동	산53-26	대문	철재	D80xW4.0xH2.0	-	1	EA	김O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				
	54	산곡동	산53-26	웬스 (울타리)	철재	W1.5xH1.0	-	70	m	김O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				
	55	산곡동	산53-26	경작지 (밭)	-	-	-	1085	m ²	김O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				
4	56	산곡동	산53-27	건물 (음식점)	스레트	H3.0	-	47.3	m ²	배O욱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추남로	1/1				
	57	산곡동	산53-27	건물 (음식점)	기와	H3.5	-	81.9	m ²	배O욱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추남로	1/1				
	58	산곡동	산53-27	건물	함석	H3.0	-	118.6	m ²	배O욱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추남로	1/1				
	59	산곡동	산53-27	가건물 (창고)	-	H2.2	-	45.1	m ²	배O욱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추남로	1/1				
	60	산곡동	산53-27	가건물 (창고)	-	H2.2	-	53.7	m ²	배O욱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추남로	1/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1	산곡동	산53-27	가건물 (창고)	-	H2.2	-	18.0	m ²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2	산곡동	산53-27	가건물 (창고)	-	H2.2	-	76.6	m ²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3	산곡동	산53-27	가건물 (창고)	-	H2.2	-	22.1	m ²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4	산곡동	산53-27	대문	-	-	-	1	EA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5	산곡동	산53-27	담장	야면석	H600	-	50	m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6	산곡동	산53-27	웬스 (울타리)	철재	W2.0xH1.2	-	53	m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7	산곡동	산53-27	경작지 (밭)	-	-	-	458	m ²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8	산곡동	산53-27	대나무	-	H3.0	-	200	주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69	산곡동	산53-27	무궁화	-	H1.5	-	4	주	배O옥 외 3인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5	70	산곡동	산53-28	건물 (음식점)	함석	H4.0	-	56.2	m ²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71	산곡동	산53-28	건물 (음식점)	함석	H3.5	-	168.5	m ²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72	산곡동	산53-28	가건물 (부엌)	목조	H3.5	-	24.8	m ²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73	산곡동	산53-28	가건물 (창고)	천막	H4.0	-	47.9	m ²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74	산곡동	산53-28	가건물 (창고)	천막	H3.5	-	39.2	m ²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75	산곡동	산53-28	담장	-	H3.0	-	22	m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76	산곡동	산53-28	대문	철재	W3.0xH1.8	-	1	EA	최O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77	산곡동	산53-29	가건물 (창고)	야면석	H600	-	11.2	m ²	손O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1/1				
	78	산곡동	산53-29	대문	목재	W1.0xH2.0	-	1	EA	손O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1/1				
	79	산곡동	산53-29	계단	목재	2.0x1.0xH2.0	-	1	개소	손O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1/1				
7	80	산곡동	산53-30	건물 (음식점)	함석	H4.0	-	45.4	m ²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1	산곡동	산53-30	가건물 (창고)	목조	H3.0	-	15.0	m ²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2	산곡동	산53-30	가건물	-	H2.5	-	8.8	m ²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3	산곡동	산53-30	담장	블록	H3.0	-	6	m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4	산곡동	산53-30	웬스 (울타리)	철재	W2.0xH1.4	-	25	m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5	산곡동	산53-30	왕벚나무	-	H10.0xB70	-	1	주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6	산곡동	산53-30	은행나무	-	H10.0xB40	-	1	주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7	산곡동	산53-30	경작지 (밭)	-	-	-	380	m ²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	88	산곡동	산53-31	대문	철재	D50xW4.0xH2.0	-	1	EA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89	산곡동	산53-31	웬스 (울타리)	철재	W2.0xH1.4	-	10	m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90	산곡동	산53-31	경작지 (밭)	-	-	-	211	m ²	김O태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1/1				
9	91	산곡동	산43	건물 (배드민턴장)	천막	-	-	542.4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2	산곡동	산43	건물 (창고)	컨테이너	-	-	22.0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3	산곡동	산43	가건물 (파고라)	목재	-	-	14.6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4	산곡동	산43	가건물 (창고)	천막	-	-	62.6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5	산곡동	산43	가건물 (창고)	천막	-	-	9.5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6	산곡동	산43	가건물 (창고)	천막	-	-	33.3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7	산곡동	산43	구조물 (야외무대)	데크,철재	-	-	13.4	m ²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8	산곡동	산43	웬스	루프	-	-	116	m	대한OO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1				
	99	산곡동	산43	운동기구	철재,목재	-	-	15	EA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1/1				
10	100	산곡동	산47-29	건물 (음식점)	스레트	-	-	125.6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1	산곡동	산47-29	건물 (음식점)	스레트	-	-	14.2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2	산곡동	산47-29	건물 (음식점)	스레트	-	-	195.0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3	산곡동	산47-29	건물 (음식점)	스레트	-	-	23.4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4	산곡동	산47-29	건물 (음식점)	스레트	-	-	6.8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5	산곡동	산47-29	건물 (음식점)	스레트	-	-	9.2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6	산곡동	산47-29	가건물	-	-	-	3.1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7	산곡동	산47-29	가건물	-	-	-	19.4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08	산곡동	산47-29	가건물	-	-	-	15.5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9	산곡동	산47-29	가건물	-	-	-	31.4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10	산곡동	산47-29	가건물	-	-	-	6.1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11	산곡동	산47-29	웬스 (울타리)	철재	-	-	65	m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12	산곡동	산47-29	경작지 (밭)	-	-	-	320	m ²	재단법인 OO학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1				
11	113	산곡동	산53-17	건물	스레트	-	-	67.0	m ²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14	산곡동	산53-17	가건물	-	-	-	17.2	m ²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15	산곡동	산53-17	가건물	-	-	-	26.0	m ²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16	산곡동	산53-17	가건물	-	-	-	16.3	m ²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17	산곡동	산53-17	웬스 (울타리)	철재	-	-	38	m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18	산곡동	산53-17	은행나무	-	H10.0xB20	-	3	주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19	산곡동	산53-17	청단풍	-	H2.5xR15	-	3	주	이O경 외1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1				
12	120	산곡동	산53-38	건물 (음식점)	스레트	H3..0	-	33.6	m ²	정O모 외1인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1/1				
	121	산곡동	산53-38	가건물 (창고)		H2.2		43.6	m ²	정O모 외1인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1/1				
	122	산곡동	산53-38	가건물 (창고)		H2.2		28	m ²	정O모 외1인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0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 공고기간 : 2020. 2. 11.(화) ~ 2020. 2. 17.(월)

□ 공고내용

가. 참여대상사업

연번	사업명	규모	추정감정가액	발주부서	선정수
1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평가	○ 위치: 남동구 간석동 514 일원 ○ 감정평가대상: 토지 1, 공동주택 (469세대)	1,511억원	남동구 도시재생과	1개업자
※ 2011년 선정 후 종전 평가 완료되었으나 업자 중 '한국감정원' 이 있어 1개 업자만 다시 선정하여 종후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임.(한국감정원은 2016.01.19.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2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 위치: 서구 연희동 378 ○ 감정평가대상: 수익시설(96,644.92㎡)	826억원	체육진흥과	1개업자
3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220 일원 ○ 감정평가대상: 토지139, 지장물 105	482억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개업자
4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위치: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 감정평가대상: 토지123, 지장물 122, 영업권 5	329억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개업자
5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액 산정	○ 위치: 동구 송림동 160 일원 ○ 감정평가대상: 면적 153,784.9	210억원	동구 도시정비과	1개업자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사일 기준 토지소유자 등 추천에 따른 해당사업 참여 감정평가업자는 선정 시 제외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경일
-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삼창, 제일, 대한, 하나
-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우솔, 태백, 대화, 대일감정원, 에이원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티앤비, 경일, 삼창, 태평양

나. 신청자격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20. 2. 11.(09:00) ~ 2020. 2. 17.(16:00)

라.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문서24

마.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시청 내 IDC 1층)

바.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공고일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서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
 -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서는 세로 서식으로 각 2매 이내로 작성하며,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위반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실적)**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 업무실적 보고 확인서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기타 유의사항

-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 (발주부서 개별통지)
-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하여 각 2매 이내 세로 서식으로 구체적 작성
-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
-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20. 2. 17.(월) 16: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임.
-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평가 : 남동구 도시재생과(☎453-8393)
 -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440-4952)
 -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40-3765)
 -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40-3765)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액 산정 : 동구 도시정비과(☎770-6683)
-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440-45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참여 사업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해당사업 기 참여 등 제외 해당 내역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협회: 법인소속확인서)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협회: 경력증명서) ○ 참여 감정평가사의 공고일 이전 최근 1년 관내 평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실적 20건 이상에 대한 협회 발행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협회 발행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 보험 등 가입여부(협회: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 ○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주의,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 		
감정평가 수행계획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적 평가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세로양식으로 각 2매 이내 작성(도면을 제외한 그림, 도형 등은 사용 금지)		
기타 의견	※ 해당사업에 대한 소유자 추천 등 기 참여 등에 따른 제외사유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참여 감정평가사 평가실적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관내 평가 실적)

연번	사 업 명	평가대상소재지	발주처	감정서번호	평가사
1					
2					
3					

※ 참여 감정평가사 관내 평가실적은 참여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이 우리시 관내인 평가실적으로 공고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말하며 참여 평가사별 작성.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년 월)	
1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2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02. 12.

인천광역시장

- 사업명 :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열람기간 : 2020.02.12. ~ 2020.02.26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로 990), ☎ 032-458-7182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3-6,201호), ☎ 032-569-7566
- 의견제출기간 : 2020.02.12. ~ 2020.02.2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73-11번지 1필지(2,714㎡)
 - 토지소유자 : 기○○○○○○○○○○○○○○○○○○(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로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73-11번지 계사(교회) 등 총98건
-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 - 15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대상 확대로 관리 사각지대 방지(안 제2조제4호)
- 법적 근거 없는 조문 수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4,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20세대 이상”을 “모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매년”을 “시장은”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u>20세대 이상</u> 공동주택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모든</u> ----- -----.</p>
<p>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p> <p>① <u>시장은 매년</u>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③ (생략)</p> <p>④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p> <p>① <u>시장은</u> ----- ----- ----- ----- ----- ----- <u>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 제33조(안전점검) ○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17. 삭제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

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유지관리업자

④ 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주택복지국 건축계획과장 최 도 수